

##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시                   | 처리기간        | 30일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신청인  |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 |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주소(소재지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신청내용 | 폐업품목                   |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| 지목  | 가축사육시설의 면적(㎡) | 가축사육마릿수 | 철거·폐기·용도변경 면적(㎡)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」 제11조의4제1항 및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신청인 제출서류    | 1. 가축의 사육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<br>2. 폐업지원금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| 수수료 |
|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| 1.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<br>2. 「축산법」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서 | 없음  |

#### 작성방법

- 신청인란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명 등을 적되,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가축사육시설의 토지 등의 공부(公簿)상 소재지와 지목·면적 등을 적습니다.
-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은 실제로 철거·폐기·용도변경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.
- 가축사육마릿수 및 철거·폐기·용도변경 면적란은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마릿수와 면적 토지대장·농지대장(農地臺帳)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가축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·폐기·용도변경 면적을 적습니다.

#### 처리절차

|        |   |    |   |       |   |    |   |      |   |    |
|--------|---|----|---|-------|---|----|---|------|---|----|
| 신청서 작성 | → | 접수 | → | 조사·확인 | → | 검토 | → | 지급결정 | → | 통지 |
|--------|---|----|---|-------|---|----|---|------|---|----|

신청인

처리기관 : 시·군·구(폐업지원금 담당부서)